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6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여 (3자녀⇒2자녀)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
- 나. 종료사업 삭제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로 변경 (안 제2조제1호)
- 나. 아이조아카드의 대구도시철도 요금할인은 3자녀 이상으로 현행 유지 (안 제13조제2항)
- 다. 출산 장려·양육·결혼장려 지원 조문 정비 및 종료사업 등 삭제 (안 제9조,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 반영 예정
- 다. 합 의 : 예산부서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8. 21. ~ 9. 11.(21일간)

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4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없음
- 6) 비용추계서 : 불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·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
2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·임신·출산·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·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·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민의 책무) 모든 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출산장려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2.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
3. 출산 및 양육 등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시책
4.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 공무원의 우대 시책
5. 양육지원서비스의 강화 방안
6.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
7. 결혼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
8.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·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내용) ①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

2.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
3.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·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금 신청 및 절차) ① 제9조제1항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관할 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·동장은 행정기관의 정보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신생아의 출생 사항, 신청인의 주소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지원의 중지)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·군수(이하 “구청장·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
1.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3.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제12조(지원금의 환수) 시장 또는 구청장·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아이조아카드) ①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·교부하고, 대상자가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

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우대 및 할인 혜택 중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은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한정한다.

제14조(출산장려의 날)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11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출산장려주간으로 한다.

제15조(결혼장려 지원) ①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
2.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교육 및 홍보
3. 신혼부부 등 주거마련을 위한 비용 지원
4. 작은결혼식 지원 및 문화 확산 사업
5.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저출생 대응 관련사업 지원) 시장은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7조(경비보조 및 지원)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결혼장려 또는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의 지원절차 및 방법,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8조(포상) 시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1.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이바지한 사람
2.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
3.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다목 중 “다자녀가정(셋째 이상)”을 “다자녀가정(2명 이상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7호 중 “다자녀가정(셋째 이상)”을 “다자녀가정(2명 이상)”으로 한다.

■ [별지]

[양쪽]
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제10조의2 관련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신청 시 별도안내	
신청인 (대리 신청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출산자와의 관계		휴대전화	
	도로명주소 (주민등록주소지)				집전화	
출산자 (산모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휴대전화	
	도로명주소 (주민등록주소지)				집전화	

※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“출산자”란 작성 생략 /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

가족 사항	세대주와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동거여부	주소 (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)
	본인			[] 예 [] 아니오	
	배우자			[] 예 [] 아니오	
	자			[] 예 [] 아니오	
	자			[] 예 [] 아니오	
	자			[] 예 [] 아니오	

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<small>(지자체별로 정함)</small>	출생축하금	[] 둘째자녀(이름:) [] 셋째자녀(이름:) [] 넷째자녀 이상(이름:)
	출생장려금	

전국 공통 서비스	서비스명	출생자 성명	신청 사항			
	양육수당	※ 출생자 모두 기재	[] 가정양육수당		[] 농어촌양육수당	
	해산급여		[] 해산급여(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)			
	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		[] 출산비용 지원(등록장애인)			
	전기료 경감		[] 출산가구 [] 다자녀(3명 이상)	고객명 :	고객번호 :	
	다자녀(3명이상) 도시가스료 경감		[] 도시가스사업자명 :	고객명 :	고객번호 :	
	다자녀(3명이상) 지역난방비 경감		[] 지역난방사업자명(코드) :	고객명 :	고객번호 :	

급여 계좌	성명	출산자와의 관계	대상서비스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참고사항 등

※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,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

결과 통지 방법	[] 문자 서비스(SMS) : 결정사항,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
----------	---

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대리 신청인) 성명 : 20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 하

※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, 지침 등의 개정·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모자보건법

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모자동실 설치·운영,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에 의거, 대구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(3자녀 이상 ⇒ 2자녀 이상)
-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확대로 인하여 입학축하금 세출예산 증가 및 시설이용료 감면으로 세외수입 감소 예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(기존 3자녀⇒2자녀)
 - (2023년) 700명 ⇒ (2024년) 4,530명 (6.5배 ↑)
- 시설이용료의 경우,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감면대상자 증가 ⇒ 세외수입 감소 (시 소관 체육·공영주차장 등 시설 120개소)

3. 관련조문

-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
-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1항제2호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은 차등지원
 - 둘째아 30만원, 셋째아 이상 50만원
- 市 소관 체육·공영주차장 등 시설이용료 감소분은 120개소 합계 추계금액

나. 추계 결과 : 연도별 비용추계표 참고

다. 재원조달방안 : 지방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장 김 신 영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분	1차년도 (2024년도)	1차년도 (2025년도)	1차년도 (2026년도)	1차년도 (2027년도)	1차년도 (2028년도)	계 (금액)
세 입						
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(감소액)	3,060,000	3,060,000	3,060,000	3,060,000	3,060,000	15,300,000
세 출	시비 100%					
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	1,514,600	1,458,600	1,647,100	1,655,600	1,681,800	7,957,700
출생순위 둘째아 이상 학생수 (명)	2008년생	2009년생	2010년생	2011년생	2012년생	계 (명)
	4,530	4,378	4,861	4,892	4,982	23,643

◇ 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: 3자녀 이상 가정 →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대상자 확대 시
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추계 금액임
(市 소관 체육·공영주차장 등 시설 : 120개소)

◇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: 둘째아 30만원/인, 셋째아 이상 50만원/인